(서귀포해양경찰서)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「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」(서귀포해양경찰서고시 제2023-2호)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적절성·명확성 검토 및 전반적 내용에 대한 용어·자구 등을 재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고시 제명 변경

나. 금지구역 명칭 명확화 및 내용 정비

다. 문의처 삭제 및 전반적인 용어·자구 수정

라. 금지구역도(별첨) 현행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0조(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)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: 지방해양수산청, 각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의

라. 기타: 신·구조문 대비표, 금지구역도(별첨)

서귀포해양경찰서고시 제2026-○○호

(서귀포해양경찰서)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

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귀포해양경찰서”를 “(서귀포해양경찰서)”로 한다.

1. 중 “서귀포해양경찰서”를 삭제하고,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장소	기간	구역	대상
화순금모래해수욕장	해수욕장 개장기간	수영경계선 기준 안쪽 해상 및 바깥쪽 10m 이내 해상	모든 수상레저기구
중문색달해수욕장		수영경계선 기준 안쪽 해상 및 바깥쪽 10m 이내 해상	
표선해수욕장		수영경계선 기준 안쪽 해상 및 바깥쪽 10m 이내 해상	
신양섭지해수욕장		수영경계선 기준 안쪽 해상 및 바깥쪽 10m 이내 해상	
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해역	연중	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. 33-30-34.95N, 126-53-58.42E 2. 33-30-36.09N, 126-53-58.04E 3. 33-30-36.63N, 126-53-59.68E 4. 33-30-35.62N, 126-54-00.26E	

2. 를 삭제한다.

3. 중 “3.”을 “2.”로, “금지구역 안에서”를 “금지구역에서”로, “에 의하여”를 “에 따라”로, “부과됩니다”를 “부과된다”로 한다.

4. 중 “4. 재검토 기한”을 “3. 재검토기한”으로 한다.

별첨 중 “별첨”을 “별표”로 하고, 제목 중 “서귀포해양경찰서”와 “(제1호 관련)”을 삭제하며, 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



화순금모래해수욕장



중문색달해수욕장



표선해수욕장



신양섭지해수욕장



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해역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	(서귀포해양경찰서) ---------- ----------
1.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	1.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
 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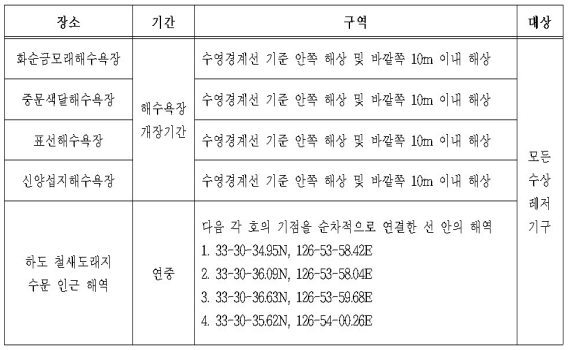
2. 문 의 처: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 (064-793-2449, 2549)	<삭 제>
3. 참고사항: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	2. 참고사항: ---------- 금지구역에서 ---------- ----------에 따라 ----- ---------- 부과된다.
4. 재검토 기한: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도 1	3. 재검토기한: - - - - - - - - - - - - - ---------- ----------

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[별첨]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(제1호 관련)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. [별표]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

별 첨 | 일부개정안 전문

서귀포해양경찰서고시 제2026-○○호

(서귀포해양경찰서)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

1.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

장소	기간	구역	대상
화순금모래해수욕장	해수욕장 개장기간	수영경계선 기준 안쪽 해상 및 바깥쪽 10m 이내 해상	모든 수상레저기구
중문색달해수욕장		수영경계선 기준 안쪽 해상 및 바깥쪽 10m 이내 해상	
표선해수욕장		수영경계선 기준 안쪽 해상 및 바깥쪽 10m 이내 해상	
신양섭지해수욕장		수영경계선 기준 안쪽 해상 및 바깥쪽 10m 이내 해상	
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해역	연중	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. 33-30-34.95N, 126-53-58.42E 2. 33-30-36.09N, 126-53-58.04E 3. 33-30-36.63N, 126-53-59.68E 4. 33-30-35.62N, 126-54-00.26E	

2. 참고사항: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3. 재검토기한: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